산・학・연협력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07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산・학・연간의 제반 협력관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・학・연 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위원 및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・학・연간의 연계체제 확립
2. 직무분석 및 직업적 능력의 평가방법의 연구개발
3.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의 심의
4.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
5. 교수, 학생 현장연수 및 실습지도
6. 산업체 및 연구소 인사의 강사활용
7. 산・학・연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
8. 산・학・연간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산・학・연 협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자문위원) ① 산・학・연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산・학・연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